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사전 모의 거래과정 이수)
 나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외화증권거래설명서 외 5개 설명서 예금자보호안내문 등 반영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6/8/19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신규 거래를 위한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추진함에 따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투자시 모의거래과정 이수 요건을 반영하기 위함
 — ‘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(7.16일 · 7.29일) 후속조치 관련’(금융위, 2026.8.12)

2) 주요 내용

-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사전 모의거래과정 이수(제4-12조)
 — 일반투자자가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투자시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금융투자회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
 • 기존 국내상장 또는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 투자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ETF · ETN에 투자하는 경우 모의거래과정 추가 이수 의무 면제(부칙 제2조)
 •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름
-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· ETN 기본예탁금 적용기준 협회 통지 등(제4-13조)
 —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 · ETN에 대한 기본예탁금적용기준의 제정 · 개정시 사전에 공표하고, 7 매매거래일 이내에 협회에 통지하도록 규정
 •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의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 한정하는 사항은 한국거래소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을 준용하여 반영(2026.7.30)한 바 있으며, 동일한 내용이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」에도 신설됨에 따라 준용 조문 추가정비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·ETN의 기본예탁금적용기준 제정·개정시에는 한국거래소에 통지(한국거래소 「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제111조의3 제3항)

나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2026/8/25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한도 상향(5천만원→1억원)에 따른 예금자보호 안내체계 명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(2025.8.)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 - 「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·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(2026.9.1 시행)
 - 기존 임의사항이었던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로고 표시를 의무화

2) 주요 내용

- 외화증권거래설명서 외 5개 설명서에 예금자보호안내문 및 예금보호록(비보호금융상품) 반영
 -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핵심설명서,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,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,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,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